

「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」 참여업체(소상공인) 추가모집 공고

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」의 참여업체(소상공인 부문)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.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9. 18.

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☐ 접수 방법

-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에서 공고 확인 후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 - 이메일: gagol173@nate.com
 - 방 문: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,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

☐ 문의

-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
동부지소 ☎ 054-612-2978, 2979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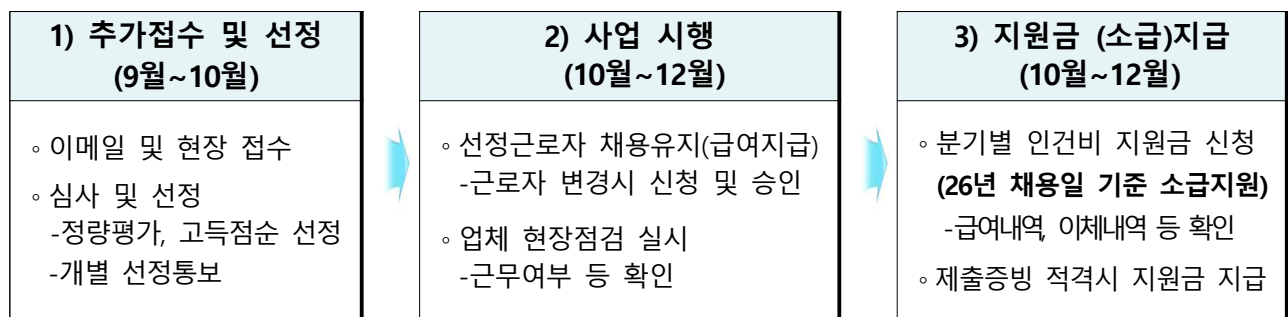
☐ 선정결과 통보

- 기업별 개별통보

1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	: 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
○ 사 업 기 간	: 2026. 4. ~ 2026. 12.
○ 추 가 모 집 대 상	: 신중년층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자
○ 지 원 내 용	: 신중년층 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 (소급)지원
○ 신 청 방 법	: 이메일 접수(gagol173@nate.com)
○ 추 가 모 집 규 모	: 신규채용 근로자 5명 정도
○ 선 정 방 법	: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
○ 신 청 기 간	: 2026. 9. 21.(월) ~ 10. 12.(월)

2. 추진절차



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지원대상

□ 지원 대상

- 신중년(만40세 이상 ~ 만64세 이하)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

※ 소상공인 부문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모집

가. 중소기업 지원대상 (※모집마감)

- 포항시 소재 기업이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나. 소상공인 지원대상

- 포항에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

소상공인 범위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의 근로자 수, 매출액 기준 모두 충족

○ 근로자 수 기준

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	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

○ 업종별 매출액 기준 ※자세한 사항은 붙임2. 참조

기업의 주된 업종	평균 매출액
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,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,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	120억원 이하
운수 및 창고업 등	100억원 이하
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,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)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, 건설업 등	80억원 이하
도매 및 소매업	60억원 이하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	30억원 이하
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15억원 이하

※지원제외 업종(중소기업/소상공인 공통)

- ①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② 변호사/회계사/병원/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/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- ③ 비영리기업/단체/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 - *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, '협동조합 기본법'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'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'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
- ④ 기타 포항시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

다. 참여(지원) 제외대상 기업
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국가 및 자치단체
-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)
-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장
-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
- 기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

라. 사업참여 근로자 자격요건 (※모두 충족)

① 입사요건

- 사업 신청업체에 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
 - 【중소기업】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 - 【소상공인】주 2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
② 나이요건: 채용일 기준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자

③ 거주요건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포항시 거주자

【지원제외 근로자】

- 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」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*는 배제
 - ※ 참여근로자가 2023년~2025년 간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026년 사업 제한, 2024년~2025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후순위 선발 예정
 - ※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·반복 참여 여부 확인
- 사업주(대표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※ 단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당해 사업체에 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
- 참여업체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근로자

4.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

□ 지원 내용

-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
※신규채용 기준 : 26년 1월 1일 이후 입사, 4대 사회보험 가입일 기준
- 채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
- 업체당 최대 3명 지원
 -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기준 최대 3명 지원
 -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1개 사업장(선택)에 최대 3명 지원
- 지원기간 : 26.1.1 ~ 26.11.30. 기간 중 최대 10개월 (※선정시 입사일기준 소급지원)

□ 지원요건

-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의무
- 월 임금의 40%이상 사업체 부담 의무
- 주 25시간 이상 근무시 지원
-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

◆ 4대 보험 가입대상 안내

- 국민연금 :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
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)
- 건강보험 :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)
- 고용보험 :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
- 산재보험 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

5.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

□ 선정 방법

-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잔여 예산범위 내 선정
-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업력이 높은순으로 선정

□ 추가 선정

-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, 지원중지, 환수 등으로 사업비 잔액 발생시 평가 후순위 업체 추가 선정

□ 평가항목 및 배점

【1. 중소기업 부문 평가표】

평가항목(배점)		점수 부여 기준	비고
중소 기업 평가 항목	고용 증가율 (30)	• 2025년 3월 31일 대비 2026년 3월 31일 고용인원 증가율 - 20% 이상 (30점) - 10% 이상 ~ 20% 미만 (25점) - 0% 이상 ~ 10% 미만 (20점) - 0% 이하(감소) (15점)	·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확인
	기업규모 (30)	• 2025년 매출액 기준 - 10억원 이상 ~ 50억원 미만 (30점) - 50억원 이상 ~ 100억원 미만 (20점) - 10억원 미만 또는 100억원 이상 (10점)	· 매출자료 확인
	성장성 및 경쟁력 (20)	• 경영·기술·안전 등 우수기업 인증 여부 - 3건 이상 (20점) - 1건~2건 (15점) - 없음 (10점)	· 유효기간 내 인증서
	반복지원 여부 (20)	• 최근 2년 동사업 지원이력 여부 - 지원이력 없음 (20점) - 지원이력 있음 (10점)	· 수행기관 자체확인
합계		100점	

【2. 소상공인 부문 평가표】

평가항목(배점)		점수 부여 기준	비고
소상 공인 평가 항목	기업규모 (30)	• 2025년 매출액 기준 - 1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(30점) - 15억원 이상 ~ 30억원 미만 (20점) - 1억원 미만 또는 30억원 이상 (10점)	· 매출자료 확인
	업력 (20)	• 사업장 유지 기간 - 10년 이상 (20점) - 5년 이상 ~ 10년 미만 (15점) - 1년 이상 ~ 5년 미만 (10점) - 1년 미만 (5점)	· 사업자등록증

소상공인 평가 항목	고용 안정성 (30)	• 신규채용 인력 근로 시간 - 주 40시간 이상 (30점) - 주 25시간 초과 ~ 40시간 미만 (22점) - 주 25시간 (14점)	· 근로계약서 · 2명 이상인 경우 평균값 적용 (소수점이하 절사)
	반복지원 여부 (20)	• 최근 2년 동사업 지원이력 여부 - 지원이력 없음 (20점) - 지원이력 있음 (10점)	· 수행기관 자체확인
합계	100점		

□ 선정 통보 및 현장점검

- 선정업체 개별 통보
- 사업기간 중 선정업체 현장점검 실시
(사업장 운영 여부, 지원대상 근로자 근로 확인, 의견 수렴 등)

□ 지원금 지급

- 업체가 인건비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지원금 신청시 사업체 계좌로 지급
- '26. 1. 1. 이후 채용 인력에 대해 **입사일 기준 인건비 소급 적용 지원**
- 최초 신청은 근로자가 **1개월 만근 후 신청 가능**
- 신청 및 지급시기 : 2~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

구분	신청 및 지급 일정				비고
인건비 해당 월	1~5월분	6~7월분	8~9월분	10~11월분	· 일정상 조정 가능
신청시기	6월	8월	10월	12월	
지급시기	신청일로부터 1~2개월 정도 소요				

□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제외(환수)

-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등록 및 중복수혜 방지 관리
- 사업기간 중 참여근로자 고용 및 거주(포항시)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
※포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 요청

- 사업장 가동 및 재직 확인을 위한 기업현장 방문
※**현장점검 실시, 지원근로자 3회 이상 근무지 내 부재시 지원 중지**
- 사업주는 채용 대상자의 근로개시일 전까지 근로계약서 체결 완료 의무
- 취업 근로자 중도 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
- 채용일 이후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중도 퇴사자는 지원금 미지급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
-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

☐ 근로자 변경

○ 참여 근로자 변경 신청 및 승인

- 참여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신규 채용근로자로 변경 신청 가능
단, 퇴사일 기준 **1개월 이내 변경신청 가능**
- 업체별 변경 신청에 대해 일괄 승인하며 변경 근로자 입사일 기준 소급 지원

6. 신청방법

☐ 신청방법

- 접수기간: 2026. 9. 18.(금) ~ 10. 12.(월)
- 접수방법
 - 이메일(gagol173@nate.com) 접수 및 방문 접수
- 접수시 "제출서류"를 순서대로 묶어 **1개의 PDF 파일**로 제출
-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

☐ 문의

- 전화: 054-612-2978, 2979
- 방문: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,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

☐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됨.
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에 공고 예정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사업신청시 제출	①【서식1】「신중년 고용지원사업」 참여신청서
	②【서식2】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(사업자)
	③ 참여자 서약서(대표자, 근로자)
	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동의서(근로자)
	⑤ 업체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사업자)
	⑥ 사업자등록증 사본
	⑦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<가족 채용 여부 확인>
	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※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
	⑨ 사업자-근로자 간 근로계약서
	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전체표시) ※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
	⑪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	⑫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
	⑬ (중소기업)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2025. 3. 31 / 2026. 3. 31 기준 각 1부)
	⑭ (중소기업) 경영·기술·안전 등 우수기업 인증서 각 1부
	⑮ 외국인 등록증 사본(해당시)
	⑯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(요청시)

※제출서류 ⑬~⑭은 중소기업만 제출

※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